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50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서명옥 · 김기웅 · 조은희
박충권 · 이현승 · 김정재
박대출 · 성일중 · 박성훈
서천호 · 서일준 · 김용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교제관계에 있던 여성을 강남의 한 건물에서 살해한 사건을 비롯해, 같은 해 3월에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모친을 상해한 사건 등 교제폭력 살인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실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 중 또는 교제 이후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2014년 6,675건에서 2018년 10,245건, 2022년 12,841건으로 14년 대비 92.4%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의 기간은 제41조에 따라 최장 6개월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특징을 보이는 교제폭력의 성격상 현저히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때로는 형사절차의 진행기간에도 미치지 못해 보호조치의 공백이 발하기도 함.

이에 최장 6개월 동안 가능하던 보호처분을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합산하여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및 제41조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가정폭력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가정폭력범죄의”를 “가정폭력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이하 “가정폭력범죄등”이라 한다)의”로, “가정폭력범죄를”을 “가정폭력범죄등을”로, “가정폭력범죄로”를 “가정폭력범죄등으로”로, “피해자와”를 “교제관계의 신뢰 및 피해자와”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의2·제3호의2·제3호의3·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가정폭력범죄로”를 “가정폭력범죄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가정보호사건”을 “가정보호사건등”으로, “가정폭력범죄로”를 “가정폭력범죄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가정보호사건에”를 “가정보호사건등에”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2 중 “가정폭력범죄로”를 “가정폭력범죄등으로”로 한다.

1의2. “교제관계폭력”이란 교제관계에 있거나 과거 교제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가정폭력등”이란 제1호의 “가정폭력”과 제1호의2의 “교제관계폭력”을 말한다.

2의2. “교제관계”란 친밀한 관계의 형성·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서 장래에 혼인을 약속하는 등 관계의 성격, 지속기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애정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3의2. “교제폭력범죄”란 교제폭력으로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의3. “가정폭력범죄등”이란 제3호의 가정폭력범죄와 제3호의2의 교제폭력범죄를 말한다.

4의2. “교제폭력행위자”란 교제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4의3. “가정폭력등행위자”란 제4호의 가정폭력행위자와 제4호의2의 교제폭력행위자를 말한다.

제3조 본문 중 “가정폭력범죄에”를 “가정폭력범죄등에”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가정폭력행위자에”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로,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을 “가정폭력등 치료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가정폭력행위자에”를 각각 “가정폭력등행위자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가정폭력범죄를”을 “가정폭력범죄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폭력범죄를”을 “가정폭력범죄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정폭력범죄를”을 “가정폭력범죄등을”로, “가정폭력피해자의”를 “피해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정폭력범죄를”을 “가정폭력범죄등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가정폭력범죄에”를 “가정폭력범죄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폭력범죄에”를 “가정폭력범죄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등이 발생하였고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해자의 신체에 시간적 근접성을 가진 상처의 흔적이 보이는 경우

나. 가해자가 이 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전력
이 있는 경우

다. 가해자가 가정폭력등과 관련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체

포되었던 전력이 있는 경우

라. 가정폭력등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과거 가정폭력등으로 인한 신고가 있었던 경우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해자의 스톱킹행위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바.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현장의 징후가 있는 경우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사법경찰관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2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주된 가해자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등과 관련한 이전의 신고내용
2. 가정폭력등의 각 당사자에게 발생한 부상 등의 상대적 심각성
3. 가정폭력등의 각 당사자가 자기 또는 제3자를 방위하기 위하여 행동하였는지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6조제1항 전단 중 “가정폭력행위자를”을 “가정폭력등행위자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가정폭력행위자인”을 “가정폭력등행위자인”으로, “가정폭력행위자와”를 “가정폭력등행위자와”로, “가정폭력범죄를”을 “가정폭력범죄등을”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가정폭력범죄를”을 “가정폭력범죄등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가정폭력범죄가”를 “가정폭력범죄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정폭력행위자가”를 “가정폭력등행위자가”로, “가정폭력범죄가”를 “가정폭력범죄등이”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가정폭력범죄가”를 “가정폭력범죄등이”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가정보호사건의”를 “가정보호사건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가정폭력범죄로서”를 “가정폭력범죄등으로서”로,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가정보호사건으로”를 “가정보호사건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가정폭력범죄에서”를 각각 “가정폭력범죄등에서”로 한다.

제9조의2 중 “가정폭력사건을”을 “가정폭력사건등을”로,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가정보호사건의”를 “가정보호사건등의”로,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정보호사건의”를 “가정보호사건등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가정보호사건으로”를 “가정보호사건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정폭력범죄와”를 “가정폭력범죄등과”로, “가정폭력범죄에”를 “가정폭력범죄등에”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가정폭력행위자에”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로, “가정보호사건의”를 “가정보호사건등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를”을 “경우 가정폭력행위

자등을”로, “이내에 가정폭력행위자를”을 “이내에 가정폭력등행위자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가정폭력행위자에”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가정보호사건으로”를 “가정보호사건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가정보호사건을”을 “가정보호사건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정폭력행위자와”를 “가정폭력등행위자와”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가정폭력행위자에”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정폭력범죄에”를 “가정폭력범죄등에”로, “가정보호사건이”를 “가정보호사건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호사건에”를 “가정보호사건등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호사건이”를 “가정보호사건등이”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가정폭력범죄의”를 “가정폭력범죄등의”로, “가정보호사건의”를 “가정보호사건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정보호사건에”를 “가정보호사건등에”로,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한다.

제18조의2 중 “가정보호사건의”를 “가정보호사건등의”로 한다.

제19조 중 “가정보호사건을”을 “가정보호사건등을”로,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가정폭력범죄의”를 “가정폭력범죄등의”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가정보호사건을”을 “가정보호사건등을”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가정폭력범죄의”를 “가정폭력범죄등의”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가정폭력범죄의”를 “가정폭력범죄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정보호사건을”을 “가정보호사건등을”로 한다.

제23조 중 “가정보호사건을”을 “가정보호사건등을”로, “가정폭력행위자에”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정폭력행위자가”를 “가정폭력등행위자가”로 한다.

제25조 중 “가정폭력행위자가”를 “가정폭력등행위자가”로 한다.

제26조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는”을 “가정폭력등행위자는”으로, “가정보호사건에”를 “가정보호사건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가정폭력행위자가”를 “가정폭력등행위자가”로,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호사건의”를 “가정보호사건등의”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정폭력행위자 또는”을 “가정폭력등행위자 또는”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로, “가정폭력행위자가”를 “가정폭력등행위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가정폭력행위자가”를 “가정폭력등행위자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가정폭력행위자에게”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를”을 “가정폭력등행위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가정폭력행위자에게”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가정폭력행위자를”을 “가정폭력등행위자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가정보호사건의”를 “가정보호사건등의”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가정폭력행위자나”를 “가정폭력등행위자나”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가정보호사건을”을 “가정보호사건등을”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가정보호사건에”를 “가정보호사건등에”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가정보호사건의”를 “가정보호사건등의”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가정보호사건의”를 “가정보호사건등의”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가정보호사건의”를 “가정보호사건등의”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호사건을”을 “가정보호사건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가정보호사건으로”를 “가정보호사건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한다.

제38조 전단 중 “가정보호사건은”을 “가정보호사건등은”으로 한다.

제39조 중 “가정보호사건의”를 “가정보호사건등의”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가정폭력행위자가”를 각각 “가정폭력등행위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가정폭력행위자에”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로 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중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40조제1항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 중 “가정폭력범죄에”를 “가정폭력범죄등에”로,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한다.

제44조 중 “가정폭력행위자에”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폭력행위자가”를 “가정폭력등행위자가”로 한다.

제47조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가정폭력행위자는”을 “가정폭력등행위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가정폭력행위자가”를 “가정폭력등행위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정폭력행위자에게”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정폭력행위자가”를 “가정폭력등행위자가”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한다.

제55조제1항 본문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폭력행위자에게”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가정폭력행위자를”을 “가정폭력등행위자를”로, “가정보호사건”을 “가정보호사건등”으

로 한다.

제55조의5제2항 중 “가정폭력행위자가”를 “가정폭력등행위자가”로 한다.

제55조의6제1호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한다.

제55조의8제1항 본문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가정보호사건으로”를 “가정보호사건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정보호사건에서 가정폭력행위자와”를 “가정보호사건등에서 가정폭력등행위자와”로 한다.

제60조제3항 전단 중 “가정폭력행위자는”을 “가정폭력등행위자는”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폭력행위자는”을 “가정폭력등행위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는”을 “가정폭력등행위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는”을 “가정폭력등행위자는”으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 “가정폭력범죄를”을 “가정폭력범죄등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가정폭력범죄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4조의4제1항 및 제4조의5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각각 “가정폭력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가정폭력”이란”을 ““가정폭력등”이란”으로, “제2조제1호”를 “제2조제1호의3”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4호”를 “제2조제4호의3”으로 한다.

제1조, 제1조의2,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제7호·제8호·제9호·제10호, 제4조제3항·제4항, 제4조의2의 제목,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4조의3의 제목, 제4조의3제1항·제3항·제5항, 제4조의7의 제목, 제4조의7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호·제1호의2·제2호·제5호·제6호, 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의 제목, 제8조의3제1항, 제9조의3제1항, 제9조의4제1항·제5항 및 제17조 중 “가정폭력”을 각각 “가정폭력등”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의3제1항제2호, 제9조의4제3항, 제18조제2항부터 제18조제4항까지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각각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한다.

제9조의2 전단 및 제9조의4제6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를 각각

“가정폭력등행위자로부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을 “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는”으로 한다.

제4조의5 중 “가정폭력범죄와”를 “가정폭력범죄등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가정폭력범죄의”를 “가정폭력범죄등의”로 한다.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항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가정폭력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2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가정폭력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다른 가정폭력범죄”를 “다른 가정폭력범죄등”으로 한다.

④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2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가정폭력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다른 가정폭력범죄”를 “다른 가정폭력범죄등”으로 한다.

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가정폭력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정폭력범죄”는”을 ““가정폭력범죄등”은”으로, “가정보호사건”을

“가정보호사건등”으로 한다.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 및 제71조제1항제2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각각 “가정폭력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⑦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및 제42조제7항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각각 “가정폭력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⑧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제20조 전단, 제34조제2항제1호·제2호, 제44조 전단, 제45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6조제1항 전단 및 제57조제4항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각각 “가정폭력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44조 후단, 제45조제4항 후단 및 제56조제1항 후단 중 “가정보호사건”을 각각 “가정보호사건등”으로 한다.

⑨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 및 제29조제6항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각각 “가정폭력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⑩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가정폭력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⑪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가정폭력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u>가정폭력범죄</u>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u>가정폭력범죄</u>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u>가정폭력범죄</u>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u>피해자와</u>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u><신 설></u>	<u>가정폭력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제1조(목적) -----<u>가정폭력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이하 “가정폭력범죄등”이라 한다)의</u>-----<u>가정폭력범죄등을</u>-----<u>가정폭력범죄등으로</u>-----<u>교제관계의 신뢰 및 피해자와</u>-----.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1의2. “<u>교제관계폭력</u>”이란 <u>교제관계에 있거나 과거 교제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u> <u>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u>

<신 설>

2. (생 략)

<신 설>

3. (생 략)

<신 설>

<신 설>

4. (생 략)

<신 설>

<신 설>

다.

1의3. “가정폭력등”이란 제1호의 “가정폭력”과 제1호의2의 “교제관계폭력”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2의2. “교제관계”란 친밀한 관계의 형성·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서 장래에 혼인을 약속하는 등 관계의 성격, 지속기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애정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3의2. “교제폭력범죄”란 교제폭력으로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의3. “가정폭력범죄등”이란 제3호의 가정폭력범죄와 제3호의2의 교제폭력범죄를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4의2. “교제폭력행위자”란 교제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4의3. “가정폭력등행위자”란 제

5. “피해자”란 <u>가정폭력범죄</u>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u>가정보호사건</u>”이란 <u>가정폭력범죄</u>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u>가정보호사건</u>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u>가정폭력행위자에게</u>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u>가정폭력범죄</u>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생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가정폭력범죄</u>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u>4호의 가정폭력행위자와 제4호의2의 교제폭력행위자를 말한다.</u> 5. -----<u>가정폭력범죄등으로</u>----- -----. 6. --<u>가정보호사건등</u>--<u>가정폭력범죄등으로</u>----- -----. 7. -----<u>가정보호사건등에</u>----- ---<u>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u>--- ----- --. 7의2. ----- ---<u>가정폭력범죄등으로</u>---- ----- ----- ---. 8.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가정폭력범죄등에</u>----- -----. ----- -----
--	---

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

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가정폭력등행위자에-----

---가정폭력등 치료프로그램-----

-----.

② 가정폭력등행위자에-----

-----.

③ -----가정폭력등행위자에-----

있다.

④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 2. (생략)

3. 그 밖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생략)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2. (현행과 같음)

3. -----가정폭력등행위자의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신고의무 등) ① -----
가정폭력범죄등을-----

--.

② -----

-----가정폭력범죄등을-----

-----.

1. ~ 8. (현행과 같음)

③ -----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 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 · 피해자의 분리
 1의2. ~ 5. (생략)
 <신설>

가정폭력범죄등을
피해자의

④ _____

_____ 가정폭력

범죄등을 _____

제5조(가정폭력범죄등에 대한 응
급조치) ① -----가정폭력범죄
등에-----

-----.

1. -----가정폭력
등행위자-----
 1의2. ~ 5. (현행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등이 발생하였고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해자의 신체에 시간적 근접성을 가진 상처의 흔적이 보이는 경우

나. 가해자가 이 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

다. 가해자가 가정폭력등과 관련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체포되었던 전력이 있는 경우

라. 가정폭력등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과거 가정폭력등으로 인한 신고가 있었던 경우

<신 설>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
해자의 스톱킹행위가 있었
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행
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바.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현장의 징후가 있는 경우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사법경찰관리는 제2항에 따
라 제1항제1호의2의 조치를 취
하는 경우 주된 가해자를 판단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등과 관련한 이전의
신고내용

2. 가정폭력등의 각 당사자에게
발생한 부상 등의 상대적 심
각성

3. 가정폭력등의 각 당사자가
자기 또는 제3자를 방위하기
위하여 행동하였는지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 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가정 폭력등행위자-----.
-----가정폭력등행위자인-----가정폭력등행위자와-----가정폭력범죄등-----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가정폭력범죄등-----

-----.

-----.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가정폭력범죄등이-----

-----.

② -----가정폭력등행위자-----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

-----가정폭력범죄등이-----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가정폭력범죄등이-----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가정보호사건등의 처리) ① -----가정폭력범죄등으로서-----가정폭력등행위자의-----

는 경우에는 <u>가정보호사건</u>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 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 소를 제기할 수 있는 <u>가정폭 력범죄</u>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 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는 <u>가정폭력범죄</u>에서 피해자 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 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 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를 철회한 경우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u>가정폭력사건</u>을 수사한 결과 <u>가정폭력행위자의</u>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제10조(관할) ① <u>가정보호사건</u>의 관할은 <u>가정폭력행위자의</u> 행위 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	-----<u>가정보호사건등</u>으로 -----. ----- -----. ② ----- -----. 1. ----- -----<u>가정폭 력범죄</u>등에서----- ----- 2. ----- ----- ---<u>가정폭력범죄</u>등에서---- ----- ----- -----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u>가정폭력사건</u>등을---- -----<u>가정폭력등행위자의</u>---- ----- ----- -----. 제10조(관할) ① <u>가정보호사건</u>등 의-----<u>가정폭력등행위자의</u>-- -----
---	---

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제11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9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12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

-----.

② 가정보호사건등의-----

-----.

제11조(검사의 송치) ① -----
-----가정보호사건등
으로-----

-----.

② -----가정폭력범죄등과-----

-----가정폭력범죄등에-----

-----.

제12조(법원의 송치) -----가정폭력등 행위자에-----

-----가정보호사건등의-----
-----.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자 처리)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제10조에 따른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가정폭력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4조(송치서)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

제13조(송치 시의 가정폭력등행위자 처리) ① -----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등을-

-----이내에 가정폭력
등행위자를-----

-----가
정폭력등행위자에-----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송치서) ① -----
-----가정보호사

건등으로-----
-----.

② 제1항의 송치서에는 <u>가정폭력행위자의</u>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u>가정폭력등행위자의</u>----- ----- ----- ----- -----.
제15조(이송) ① <u>가정보호사건을</u> 송치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u>가정폭력행위자와</u>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송) ① <u>가정보호사건등</u>을----- ----- ----- ----- ----- -----. ② ----- ----- -----<u>가정폭력등행위자와</u>----- -----.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u>가정폭력행위자에</u>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 ----- -----<u>가정폭력등행위자에</u>----- ----- -----.
제17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17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u>가정폭력범죄에</u> 대한 공소 시효는 해당 <u>가정보호사건이</u>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 1. 해당 <u>가정보호사건에</u> 대한 제37조제1항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제1호의 사유에 따른 결정만 해당한다)이 확정된 때 2. 해당 <u>가정보호사건이</u> 제27조 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때	① <u>가정폭력범죄등에</u>----- -----<u>가정보호사건등이</u> ----- ----- ----- ----- -----. 1. ----<u>가정보호사건등에</u>---- ----- ----- ----- ----- 2. ----<u>가정보호사건등이</u>---- ----- -----
② (생략)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u>가정폭력범죄의</u> 수사 또는 <u>가정보호사건의</u>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u>가정폭력범죄등의</u>-----<u>가</u> <u>정보호사건등의</u>----- ----- ----- ----- ----- ----- ----- ----- ----- -----.

② 이 법에 따른 <u>가정보호사건</u>에 대하여는 <u>가정폭력행위자</u>,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생략) 제18조의2(「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u>가정보호사건의</u>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9조(조사·심리의 방향) 법원은 <u>가정보호사건을</u> 조사·심리할 때에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u>가정폭력행위자</u>, 피해자, 그 밖의 가정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u>가정폭력범죄의</u>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	② -----<u>가정보호사건</u>등에-----<u>가정폭력등행위자</u>-----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형사소송법」의 준용) ----- -----<u>가정보호사건등의</u>----- ----- -----. 제19조(조사·심리의 방향) ---- ---<u>가정보호사건등을</u>----- ----- ----- -----<u>가정폭력등행위자</u>----- ----- -----<u>가정폭력범죄등의</u>----- ----- -----
--	---

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제20조(가정보호사건조사관) ①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둔다. ② (생략)	제20조(가정보호사건조사관) ① 가정보호사건등을-----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조사명령 등)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審問)이나 그들의 정신·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1조(조사명령 등) ① ----- ----- -----가정폭력등행위자의----- -----가정폭력등행위자----- ----- -----가정폭력범죄등의-----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	제2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 ----- ----- -----가정폭력등행위자----- ----- -----가정폭력범죄등의-----

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진술거부권의 고지) 판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할 때에 미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4조(소환 및 동행영장) ①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25조(긴급동행영장)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

-----.

② -----가정보호사건등을-----

-----.

제23조(진술거부권의 고지) ----
-----가
정보호사건등을-----
----가정폭력등행위자에----

-----.

제24조(소환 및 동행영장) ① --

-----가정폭력등행위자----

-----.

② -----가정폭력등행위자가-----

-----.

제25조(긴급동행영장) -----가
정폭력등행위자가-----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26조(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引致)하거나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 연월일을 적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동행영장의 집행 등) ① (생략)

②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가정폭력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인) ① 가정폭력행위자는 자신의 가정보호사건에

-----.

제26조(동행영장의 방식) -----
-----가정폭력등행위자의-----

-----.

제27조(동행영장의 집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정폭력등행위자의-----

-----.

③ -----
-----가정폭력등행위자의-----
-----.

제28조(보조인) ① 가정폭력등행위자는-----가정보호사건등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변호사, 가정폭력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④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생략)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

② -----가정폭력등행위자의

-----.
-----.

③ (현행과 같음)

④ -----가정폭력등행위자가

가정폭력등행위자의-----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임시조치) ① -----가정보호사건등의-----

-----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

-----.

1. ~ 6. (현행과 같음)

② -----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 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가정폭력등행위자 또는-----

-----가정폭력등행위자에

-----가정폭력등행위자가-----

-----.

③ (현행과 같음)

④ -----

-----가정폭력등행위자의-----

-----가정폭력등행위자

가-----

-----.

-----가정폭

력등행위자에게-----

-----.

⑤ (현행과 같음)

⑥ -----

---가정폭력등행위자를-----

---.

⑦ ~ ⑨ (생략) ⑩ <u>가정폭력행위자</u>,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⑪·⑫ (생략)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제29조제9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u>가정폭력행위자에게</u>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0조(심리기일의 지정) ①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u>가정폭력행위자를</u> 소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u>가정보호사건의</u>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1조(심리기일의 변경)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u>가정폭력행위자</u>나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u>가정폭력등행위자</u>----- ----- ----- ----- -----. ⑪·⑫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 -----<u>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u>----- -----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심리기일의 지정) ① --- -----<u>가정폭력등행위자를</u>-----. -----<u>가정보호사건의</u>----- -----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심리기일의 변경) ----- -----<u>가정폭력등행위자</u> <u>나</u>----- -----.
---	--

경우 변경된 기일을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심리의 비공개)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할 때 사
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
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
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② (생략)

제33조(피해자의 진술권 등) ①
(생략)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
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34조(증인신문·감정·통역·
번역)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정보호
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신문과 감정, 통
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을 준

-----.

제32조(심리의 비공개) ① -----
가정보호사건등을-----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피해자의 진술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가정보호사건등에-----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증인신문·감정·통역·
번역)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정보호
사건등의-----

용한다.

③ (생략)

제35조(검증, 압수 및 수색)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정보호
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협조와 원조)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
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단체에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
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
(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검증, 압수 및 수색)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정보호
사건등의-----

-----.

제36조(협조와 원조) ① -----
가정보호사건등의-----

-----.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① -----가정보호사건
등을-----

-----.

1. (현행과 같음)

2. -----
가정폭력등행위자의-----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
우에는 이를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38조(처분의 기간 등) 가정보호
사건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
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
는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하여야 한다.

제39조(위임규정)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

사건등으로-----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가정폭력등행위자

-----.

제38조(처분의 기간 등) 가정보호
사건등은-----

-----.

-----.

제39조(위임규정) 가정보호사건등
의-----

-----.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

1. 가정폭력등행위자가-----

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 사의 제한

4. ~ 8. (생략)

② · ③ (생략)

④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가정폭

2. 가정폭력등행위자가-----

3. 가정폭력등행위자가-----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가정폭력등행위자-----

⑤ _____

-----가정폭

력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0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력등행위자의-----

-----.

⑥ -----
----가정폭력등행위자에----

-----.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40조제1항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몰수)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가정폭력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가정폭력행위자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제44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법원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처분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

제42조(몰수) -----
-----가정폭력범죄등에-----
-----가정폭력등행위자-----

-----.

제44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

-----가정폭력등행위자에-----

-----.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가정폭력등행위자-----

-----.

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
-----가정폭력등행위

자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제48조(비용의 부담) ①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 결정 또는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

자가-----

-----.

1. 2. (현행과 같음)

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
가정폭력등행위자의-----

-----.

제48조(비용의 부담) ① -----

-----가정
폭력등행위자는-----

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가정폭력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②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
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
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항고) ①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

--. ----가정폭력등행위자가-

② -----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

③ -----가정폭력등행위
자가-----

제49조(항고) ① -----

-----가정폭력등행위자-----

원 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생략)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 ~ ④ (생략)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
-----가정폭력등행위자의-----

-----.

-----.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

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

-----.

1. ~ 4. (현행과 같음)

5. 가정폭력등행위자의-----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illegible]

1. 가정폭력등행위자를-----
-----가정보호사건등

2.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55조의5(이행실태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가정폭
력등 행위자가_____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
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
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5조의6(병합심리)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
가 각각 동일인인 경우

2. (생략)

제55조의8(항고와 재항고) ①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3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

제55조의6(병합심리) -----

-----.

1. 가정폭력등행위자-----

2. (현행과 같음)

[illegible]

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57조(배상명령) ①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②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0조(불복) ①·② (생략)

③ 가정폭력행위자는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7조(배상명령) ① -----

-----.

1. (현행과 같음)

2. 가정보호사건등으로-----

② -----가정보호사건등에서 가정폭력등행위자와-----

-----.

③ (현행과 같음)

제60조(불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가정폭력등행위자는-----

-----.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1. (생략)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생략)

-----.

④·⑤ (현행과 같음)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
-----가정폭력등행위자는-----

-----.

1. (현행과 같음)

2. -----

-----가정폭력등행위자

② -----

-----가정폭력등행위자는-----

-----.

③ -----
-----가정폭력등행위자는-----
-----.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6조(과태료) ----- ----- -----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u>가정폭력범죄를</u>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1. ----- ----- ----- ----- <u>가정폭력범죄등을</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